

2022 꿈의 오케스트라

안양, 브라보 오케스트라 신규단원 모집 공고

안양문화예술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최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 지역협력 거점기관으로 관내 소외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 오케스트라 육성 지원사업 <안양, 브라보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양, 브라보 오케스트라>는 기존의 1:1식 음악전문교육과는 달리, 차별화된 합주교육과 연주를 통한 즐거움과 협동심을 배울 수 있는 한국형 엘 시스템아 음악교육입니다.

2022년 신규단원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2년 5월 23일

안양문화예술재단 이사장

1. 교육개요

- 교육명 : 2022년 꿈의 오케스트라 <안양, 브라보 오케스트라>
- 교육기간 : 2022년 6월~12월, 매주 월요일·수요일 17:00~20:00 <3시간>
- 교육장소 : 평촌아트홀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76 자유공원 내)

2. 교육 지원내용

- 전 과정 무상 교육, 1인 1악기 대여
 - 주 2회(월, 수) 악기 파트별·양상블 및 전체 합주교육 실시
 - 심리상담 및 클래식 공연 관람을 통한 교육
 - 정기교육 외 특별 프로그램 진행
 - 기타 아동들의 인성발달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및 다각적인 연계 지원 모색
- ※ 신규단원에 선정된 후라도 신규단원 교육을 통해 본인 의사 및 교육 참여 저조, 보호자 비협조, 출석률 등 원인으로 탈퇴 될 수 있습니다.

3. 모집대상 및 인원

- 모집대상 : 안양시 거주 초등학교 3 ~ 6학년 사회취약계층 아동 및 일반가정 아동
- 모집인원 : **총 10여명**
- 사회취약계층 아동 기준

구분	비고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수급권자란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 증빙자료 행정복지센터/정부24 발급 가능)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또는 그 자녀 -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증빙자료 건강보험공단 발급 가능) 2022년 기준중위소득 기준 / (단위: 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1인가구</th> <th>2인가구</th> <th>3인가구</th> <th>4인가구</th> <th>5인가구</th> <th>6인가구</th> </tr> </thead> <tbody> <tr> <td>기준중위소득(50%)</td> <td>972,406</td> <td>1,630,043</td> <td>2,907,351</td> <td>2,560,540</td> <td>3,012,258</td> <td>3,453,502</td> </tr> </tbody> </table>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50%)	972,406	1,630,043	2,907,351	2,560,540	3,012,258	3,453,502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50%)	972,406	1,630,043	2,907,351	2,560,540	3,012,258	3,453,502									
조손 가정의 자녀	- 조부모와 만 18세 미만인 손자녀로 구성된 가정														
소년·소녀 가장															
다문화 가정의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자녀 - 결혼이민자(국적법에 따른 귀화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와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단,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을 가진 친부(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하여 지원 자격 인정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 '북한이탈주민'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한부모 가족 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이라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하며, 지원대상자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 정도를 고려하여 정함 ※ 일반 모자가족(모가 세대주) 또는 부자가족(부가 세대주)과는 구분 필요 ※ 한부모가족 증명서 확인														
도서벽지 거주자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거주자로서 도서벽지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 '도서벽지'란 지리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을 말하며, 산간지역/서도/수북지구/접적지구/광산지구를 말함														
장애인의 자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자녀 ※ 장애인 증명서 확인														
다자녀 가정의 자녀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 자녀」														
보훈자의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2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교육지원대상자로 통보되거나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제출자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제출자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 필요로 하는 사람 -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정신지체 / 지체장애 / 정서·행동장애 /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 의사소통장애 / 학습장애 / 건강장애 / 발달지체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아동복지시설 재원자	「아동복지법」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 '아동복지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신고를 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함 ※ 아동복지시설 재원자 확인서														
학교장 추천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 또는 자치단체장이 판단·추천한 자 ※ 기관별 5명 이하까지 가능 -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실업급여 수혜 가정 등) - 가계 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로 폐업·휴업 등에 따른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4. 모집일정 및 접수방법

- 모집기간 : 2022. 5. 23(월) ~ 6. 10(금) 18:00
- 인터뷰 심사 : 2022. 6. 18.(토) 14:00 ~ (예정) / 보호자 동반 인터뷰 실시 예정
(서류합격자에 한함, 1차 서류합격자 및 최종합격은 개별 통보)
- 접수방법 : 지원서는 전자우편 제출, smlsml0724@naver.com
관련 서류(사회취약계층 해당 증빙서류 등) 면접 시 직접 제출

5. 문의 : 문화사업부 031-687-0519